

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청인 (청구인)	성명 (상호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 (사업장) (전화번호:)		
	휴대전화번호		
사건번호 (접수번호)			
처분내용	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(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, 기분,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)		
	※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		

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.

-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
-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
-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 것

「국세기본법」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,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
지방국세청장
국세청장
조세심판원장

귀하